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정원 1명(5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상융합산업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지역 과학관 개관·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한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관측 분야 전시·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어린이과학관 전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 10명(4급 2명, 5급 5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 4.5급 5명, 5급 3명)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중앙전파관리소 23명(6급 1명, 7급 12명, 8급 10명)의 직급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중앙전파관리소 23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44호”를 “제11조제3항제24호부터 제4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81호”를 “제11조제3항제47호부터 제8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자종합계획, 클러스터 기본계획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운영·발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사업 발굴·기획·총괄
4. 양자전략위원회 및 하위 실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현황 조사·분석 및 정보체계 구축

• 운영

6. 양자과학기술이 소관사무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 수립
 8. 양자과학기술 상용화 및 기업 육성 지원
 9.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양자팍의 구축·운영
 10.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관리
 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인력의 양성 및 해외 인재·기관 유치 등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양자과학기술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 촉진 지원
 1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제18항제6호 중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디지털콘텐츠산업·가상융합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서비스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각각 “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중 “디지털콘텐츠”를 각각 “디지털

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산업”을 “산업 및 가상융합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 25. 가상융합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 26.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 27.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8.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 29. 가상융합사업 관련 자율규제 체계 구축·운영 지원
- 30. 가상융합사업 관련 임시기준 제도 도입·운영
- 31.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788”을 “791”로, 일반직 계 “779”를 “782”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2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7”을 “4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6”을 “7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18”을 “21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88”을 “791”로, 일반직 계 “779”를 “782”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21”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
관 “47”을 “46”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
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를 “7
3”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96”을 “194”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0”을 “21”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9”를 “51”로, 행정주사
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28”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7”을 “15”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2”를 “23”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7”을 “49”로, 행정주

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9”를 “28”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7”을 “1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53”을 각각 “85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3”을 “64”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7”을 “20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를 “211”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1”을 “20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51”을 각각 “85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9”를 “7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4”를 “20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4”를 “21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8”을 “198”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0”을 각각 “84”로, 3급 또는 4급 이하 “78”을 “82”로 한다.

별표 1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개발정책실 양자혁신기술개발과	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4급1명, 5급1명)	
--	--------------	--

별표 13 “4. 제3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총계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② (생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u>제21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u>제23호</u> ----- -----.
④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제11조제3항제22호</u> 부터 <u>제44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u>제11조제3항제24호</u> 부터 <u>제46호</u> ----- ----- --.
⑤ 연구성과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제11조제3항제45호</u> 부터 <u>제81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u>제11조제3항제47호</u> 부터 <u>제83호</u>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u>양자컴퓨팅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u>	<u><삭 제></u>

24.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인
력양성

25. 양자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⑩ (생 략)

<신 설>

<삭 제>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⑪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자종합계획, 클러스터 기본
계획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
자 산업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운영·발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사업 발굴·기획·총괄

4. 양자전략위원회 및 하위 실
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현황 조사·분석 및 정보
체계 구축·운영

6. 양자과학기술이 소관사무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의 기술개발 지
원 및 기술지도 수립

8. 양자과학기술 상용화 및 기
업 육성 지원

⑪ ~ ⑮ (생략)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⑮ (생략) <18>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디지털콘텐츠산업</u> 활성화에	9.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양자팍의 구축·운영 10.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관리 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인력의 양성 및 해외 인재·기관 유치 등 주요정책의 수립·추진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양자과학기술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 촉진 지원 1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⑫ ~ ⑰ (현행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⑰ (현행과 같음) ----- -----. 1. ~ 5. (현행과 같음) 6. <u>디지털콘텐츠산업·가상융합</u>
--	--

관한 사항	산업 --
7. <u>디지털콘텐츠</u> 분야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u>디지털콘텐츠</u>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서비스 등의</u>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u>디지털콘텐츠</u>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2.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13. <u>디지털콘텐츠</u>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14. <u>디지털콘텐츠산업</u> 및 정보통신·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16. <u>디지털콘텐츠</u>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6.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17. <u>디지털콘텐츠</u>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17.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
18. <u>디지털콘텐츠</u>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8.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19. <u>디지털콘텐츠</u>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9.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
20. <u>디지털콘텐츠</u> 기술 관련 대	20.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
21. 지역 디지털콘텐츠 <u>산업</u>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21. ----- <u>산업</u> 및 <u>가상융합산업</u> -----
22. <u>디지털콘텐츠</u> 기반시설 조성·지원	22. <u>디지털콘텐츠·가상융합산업</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24. <u>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u>
<신설>	25. <u>가상융합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u>
<신설>	26. <u>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제도 운영</u>
<신설>	27. <u>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
<신설>	28. <u>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u>
<신설>	29. <u>가상융합사업 관련 자율규제 체계 구축·운영 지원</u>
<신설>	30. <u>가상융합사업 관련 임시기준 제도 도입·운영</u>
<신설>	31. <u>가상융합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u>
①9 ~ ②1 (생략)	①9 ~ ②1 (현행과 같음)
제33조(한시정원) ① 삭제	제33조(한시정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1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삭 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51	853	+2
일반직 계	851	853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9	70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4	206	+1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4	213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08</u>	<u>198</u>	-10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88</u>	<u>791</u>	+3
·	·	·	
·	·	·	
일반직 계	<u>779</u>	<u>782</u>	+3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9</u>	<u>21</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7</u>	<u>46</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	<u>66</u> · ·	<u>70</u> · ·	+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	<u>218</u> · ·	<u>216</u>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88	791	+3
일반직 계	779	782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	21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7	46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	73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u>196</u>	<u>194</u>	-2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20</u>	· · <u>21</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49</u>	<u>51</u>	+2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29</u>	· <u>28</u>	-1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u>17</u>	· <u>15</u>	-2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22</u>	<u>23</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47</u>	<u>49</u>	+2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9</u>	<u>28</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7</u>	<u>15</u>	-2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53	855	+2
일반직 계	853	855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3	64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7	207	+10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	213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1</u>	<u>201</u>	-10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51	853	+2
일반직 계	851	853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9	70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4	204	+10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4	215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08</u>	<u>198</u>	-10
·	·	·	
·	·	·	

[별표 10]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80</u>	• <u>84</u>	+4
일반직 계	• <u>80</u>	• <u>84</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8</u>	<u>82</u>	+4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4. 제3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u>4. 제33조 제4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 1일)</u>	<u><삭 제></u>	-4. 제33 조제4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u>총계</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1</u>	<u><삭 제></u>	-1
·	·	·	

신·구정원대비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총계	· <u>788</u>	· <u>791</u>	+3
· · 일반직 계	· · <u>779</u>	· · <u>782</u>	+3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19</u>	· · <u>21</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7</u>	<u>46</u>	-1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u>66</u>	· <u>70</u>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u>218</u>	<u>216</u>	-2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88	791	+3
일반직 계	779	782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	21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7	46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	73	+4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u>196</u>	<u>194</u>	-2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20</u>	· · <u>21</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49</u>	<u>51</u>	+2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29</u>	· <u>28</u>	-1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u>17</u>	· <u>15</u>	-2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22</u>	<u>23</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47</u>	<u>49</u>	+2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29</u>	<u>28</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7</u>	<u>15</u>	-2
·	·	·	



[별표 10]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80</u>	• <u>84</u>	+4
일반직 계	<u>80</u>	<u>84</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8</u>	<u>82</u>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53	855	+2
일반직 계	853	855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3	64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 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7	209	+1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	211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1</u>	<u>201</u>	-10
·	·	·	
·	·	·	

[별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4. 제3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u>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u>4. 제33조</u> <u>제4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4</u> <u>년 12월 3</u> <u>1일)</u>	<u><삭 제></u>	-4. 제33 조제4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u>총계</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u> <u>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u> <u>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u> <u>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1</u>	<u><삭 제></u>	-1
·	·	·	